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1.19.(목) 조간	배포	2026.11.18.(수)
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팀 장	장현국	(02-3145-8880)
		담당자	수 석	황인욱	(02-3145-8715)

전동킥보드로 사고 내고 음주운전 차량 표적 사고 유발까지…
자동차 보험사기, 이렇게 예방하세요!

– 일상생활 속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소비자 대응요령 –

Ⅰ. 개 요

□ **자동차보험**은 **교통사고 피해자**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뒷받침하는 **사회안전망 역할**을 담당하고 있으나,

○ 이를 **악용**하여 **고의로 사고**를 **발생**시키는 수법으로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하거나, **사고조작·허위청구 권유** 등 **선량한 소비자**를 **보험사기**에 **가담**하도록 **유혹**하는 **부작용**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최근 **진로변경·교차로** 진입 등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순간을 노려 **고의**로 **사고**를 **일으키거나, 입원기간** 중 **대리운전** 또는 **택시운행**을 통해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

○ 특히 **음주운전** 차량을 **대상**으로 **사고**를 일으키거나, **적발 이후**에도 **동종 수법**을 **반복**하는 **재범 사례**도 **다수 확인**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**최근 실시**한 **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**를 토대로 **보험사기 사례**와 **대응요령**을 안내해 드리오니, 국민 여러분의 **경각심 제고**와 **각별한 주의**를 **당부**드리고자 합니다.

구분	유형	주요 수법
1	**전동킥보드 고의사고**	이면도로 진입 차량,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택시를 노려 일부러 충돌
2	**대리운전·택시기사 허위입원**	입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보험금 및 유가보조금 수령
3	**음주운전 차량 대상 사고**	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 요구
4	**재범 혐의자 고의사고**	보험사기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청구

Ⅱ. 자동차보험 사고조작 등 보험사기 사례

사례 ①	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 접촉사고 유발 보험사기

□ 혐의자 A는 **전동킥보드**를 이용해 **주행 중인 차량**에 **고의**로 **접촉**하는 수법으로 **장기간**에 걸쳐 **반복적**으로 **사고**를 **유발**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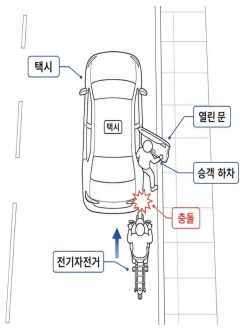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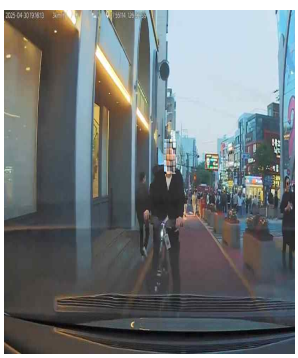
○ 혐의자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**사각지대**에서 **대기**하다가 차량이 **진로**를 **변경**하거나 **골목**을 **빠져나오는 순간**,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는 모습 없이 전동킥보드를 **차체 측면**이나 **후미**에 부딪치거나,

- 붐비는 곳에서 **택시**가 **승객**을 **내려주기 위해 정차**한 후 **뒷문이 열리는 순간**을 노려 차체 후미에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**총 80여 차례 사고**를 **유발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충돌 직후에는 과장된 통증을 호소하며 **현장**에서 **현금 합의**를 **요구**하거나,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**병원 진단서**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**대인·대물 보험금을 청구**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습니다.

□ **금융감독원**은 **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**과 **공조**하여 **유사한 경위**의 사고가 여러 차례 **반복**되고, 사고가 **특정 지역** 및 **야간 시간대**에 **집중**되는 등 **계획적 범행 정황**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
<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 >

사고약도	상대차량(택시)에 가속하여 접근	상대차량 승객 하차를 기다림	후미 추돌 접촉 사고 발생
			

사례 ②-1	**대리운전 기사의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**

□ **대리운전 기사** 일부가 **경미한 교통사고**로 **입원**한 후에도 입원기간 중 **대리운전을 계속**하면서 **허위입원**을 통해 **합의금** 등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**대리운전 기사 B**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**22일 입원**하였으나, 입원기간 중 입·퇴원일을 제외한 **20일간 대리운전**을 한 **기록**을 **확인**하였습니다.

○ **B**를 포함한 혐의자 대부분은 단순 **염좌 등 경미한 상해**로 **입원**한 후, 입원기간 중 **대리운전**을 **지속**하였으며,

- 이 중 상당수는 통상적인 입원 환자가 활동하기 어려운 **심야 시간**에 **운행**을 반복하거나 **입원 기간 중 상시적으로 대리운전**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 환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.

○ 특히 **동일 혐의자**가 **반복적**으로 **허위입원**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, 단순 **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보험금 편취**를 염두에 둔 **계획된 범행**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**입원기간 중 대리운전 사실**을 확인하고 **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**로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였습니다.



사례 ②-2	택시기사의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

□ **개인택시 기사** 일부가 **경미한 교통사고**로 입원한 후에도 입원기간 중 실제로는 **정상적**으로 **택시 영업**을 **계속**한 사실이 확인되어 **허위 입원**을 통해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○ **택시기사 C**는 혐의 기간 중 **경미한 교통사고**로 **4회에 걸쳐 총 23일간 입원**하면서 이 중 **14일간 총 36시간**(일평균 약 2.5시간) **택시 영업**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
- **택시기사 D**는 **택시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**한 **유가보조금 카드**를 **입원기간 중 10회 이상 사용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입원기간 중 병원으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

□ 금융감독원은 **허위입원 혐의**는 **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**으로, **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**는 **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**으로 각각 관할 경찰청에 **통보**하였습니다.

【참고】 유형별 처벌 수준

① **[보험사기]** 허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 혐의가 확인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(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)

② **[유가보조금 부정 수급]** 택시영업 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령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지급정지(최대 1년)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)



사례 ③ 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충돌사고 유발 보험사기

□ 혐의자 **E**는 도로에서 **음주운전**이 **의심**되는 **차량**이 **신호 위반 등 이상 주행**을 하는 것을 **발견**하고, 이를 **추격**하여 해당 차량이 **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**하여 **고의**로 **충돌사고**를 일으켰습니다.

○ 혐의자 **F**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등 **음주운전**이 **의심**되는 차량을 **발견**하고 **측면 사각지대**까지 **접근한 후**, 해당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**바짝 붙어 충돌사고**를 **유발**하였습니다.

○ 또한 일부 혐의자들은 **그룹**을 **형성**하여 **서로 동승**하며 **음주운전 차량** 및 **차선변경 차량 등**을 **대상**으로 **유사**한 **사고**를 **반복**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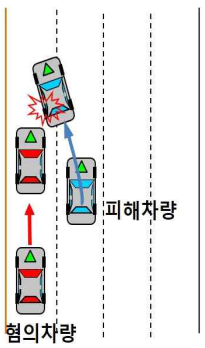
- 특히 이들은 **가해차량 운전자** 또는 **피해차량 운전자, 동승자**로 **역할**을 **바꿔가며 되풀이하는 등** 사전에 **조직적**으로 **범행**을 **공모**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< 가·피공모 고의사고 사례 >

사고		사고① (가해·피해 공모)	사고② (동승)	사고③ (가해·피해 공모)
가해차량	운전자	공범1	-	공범2
피해차량	운전자	공범2	공범1, 공범2	공범1

□ 금융감독원은 **사고영상**(블랙박스) **분석** 결과 **혐의 차량**이 음주운전 차량의 **차선 변경** 순간 **회피 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**하는 등 **사고 고의성**을 확인하고, 혐의자들을 관할 경찰청에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하였습니다.

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사고 유발 사례

사고 약도	**급가속**하여 음주차량 추격	**가속후** 차량 후방에서 유지	차선 변경하자 충돌
			

사례 ④	**보험사기 유죄 선고 출소 후에도 동일 수법 고의사고 반복(재범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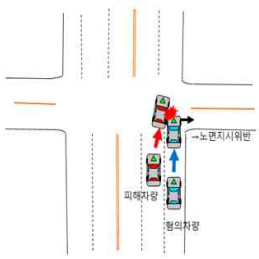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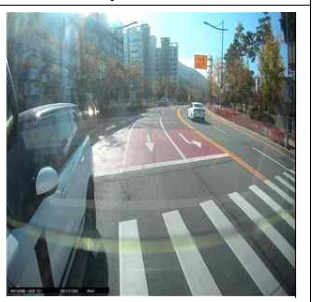
□ 혐의자 G는 **과거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**로 **실형**을 **선고**받고 **출소** 후에도 **동일**한 **수법**으로 **고의사고**를 **반복**하였습니다.

○ G는 **직장 동료**와 **공모**하여 **진로변경 차량**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**고의로 충돌**하는 방식으로 **사고**를 **유발**하여 **수억원**의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한 혐의로 **유죄 판결***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* **동일 유형의 사고가 계속·반복**된 점, 충분한 시간적·공간적 여유가 있어 **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** 이를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**고의성 인정**

○ 이후 G가 과거 **동일 혐의**로 **같이 실형**을 **선고받고 출소한 H**와 **동승**하거나 **고가 차량** 수 대를 서로 **번갈아 이용**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**20여 차례 고의사고**를 **유발**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.

< 재범 혐의자 고의사고 유발 사례 >

사고 약도	혐의차량 3차선 주행	**진로변경 확인 후 가속**	사고발생
			

□ 금융감독원은 G·H 및 다른 **혐의자들**의 **사고 이력**과 **과거 적발 내용**을 **대조**하여, **보험사기 적발 후**에도 **과거와 동일한 수법**으로 **고의사고**를 **반복**한 혐의자 수십 명을 수사기관에 **수사의뢰**하였습니다.



Ⅲ.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

☑ 이상한 사고는 현장에서 서두르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!

◈ **급한 끼어들기**, **이유 없는 급정거** 등 **일부러 낸 사고가 의심**되면,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기 전에는 상대방과 **합의하지 마세요.**

○ **블랙박스 영상**과 **현장 사진**, **목격자 진술**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·인적사항도 꼭 기록해 두세요.

※ **이미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, 의심되면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.**

☑ 킥보드·이륜차가 오가는 골목길과 승하차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살피세요!

◈ **시야가 가려지는 골목길 진입로**나 **택시 승하차 구간**은 일부러 낸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므로, **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확인**하세요.

○ **붐비는 곳**에서 하차할 경우, **정차 위치**를 **신중히 고르고 택시 승객**은 문을 열기 전에 뒤쪽을 확인하세요.

☑ 입원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, 입원 중 영업은 허위입원입니다!

◈ 만약 병원 직원이 **허위입원**을 **권유**하거나, 우연히 타인의 **허위입원**을 **알게**된다면 **금감원** 및 **보험회사**에 신고해 주세요.

○ **허위로 입원**하고 **입원 보험금** 및 교통사고 **합의금**을 **편취**하는 행위는 명백한 **보험사기**이며, 입원 중 **외출·외박**은 엄격하게 **관리**됩니다.

※ **입원 중 대리운전·택시 영업을 하면서 입원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으면 허위입원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**

☑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!

◈ **음주운전 차량**은 사고 후 약점이 잡혀 **무리한 합의**를 **요구받기 쉬워 보험사기의 표적**이 될 수 있습니다.

○ 음주운전 사고라도 **상대방의 무리한 합의 요구**에는 응하지 말고 경찰·보험사에 알리세요.

※ **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가족, 그리고 타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보험사기 피해와 별개로,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**

Ⅳ.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

□ **금융감독원**은 앞으로도 **자동차 보험사기**에 대한 **상시 모니터링**을 **지속 강화**하고, **보험사기**에 **연루**될 **우려**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 소비자의 **피해사례** 및 **유의사항**을 적극 **발굴해 나가겠습니다.**

○ 아울러, **보험사기**는 **반드시 적발된다**는 점을 유의하시고, **고수익**을 미끼로 한 **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**을 받거나 **의심 사례**를 알게 된 경우 『**보험사기 신고센터**』에 주저 없이 **제보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국민 여러분의 **적극적인 제보**가 **보험사기 적발**의 **출발점**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.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 방법]

▶ **(유선 상담·신고)** ☎1332 – **4**번(금융범죄) - **4**번(보험사기)

▶ **(인터넷 접수)*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
『민원·신고』→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
▶ **(우편 접수)**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
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